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 공고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7. 30.

고령군



< 변경내역 >

1. 화물 재지원제한기간 변경 : 5년 → 2년
2.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구매 시 국비 지원액 10% 추가 지원
3. 전기자동차 수출말소 의무운행기간 변경 : 5년 → 8년 변경
4.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화물차 판매 시 보조금 회수조건 변경
: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않고 1년 이내 판매 →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않고 2년 이내 판매

○ 사업비 : 2,860백만원(국비 1,690, 도비 468, 군비 702)

○ 사업물량 : 총195대(승용 65대, 화물 130대)

	합계	승용	화물
1차 (70%)	137대	우선순위 7대, 택시 7대, 일반 32대	우선순위 13대, 택배" 26대, 중소기업" 13대, 일반 39대
2차 (30%)	58대	일반 19대	일반 39대

※ 택배" :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차량

※ 일반을 제외한 물량 중 미집행 물량의 경우 2차 공고(7월 예정)부터는 일반물량과 통합 집행

1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개인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6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고령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1대만 구입하는 개인사업자 중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 6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고령군인 자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법인	1대만 구매하는 법인 중 사업장 주소를 고령군에 둔 법인·기업
공공기관	고령군에 위치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우선지원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다자녀(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 기존 노후경유차를 폐차 후 전기차 대체 구매
- 소상공인

○ 지원제외

- 동일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동일 차종(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 버스 간)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화물 2년)의 산정은 차량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 '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적용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 단, K-EV100참여 제작·수입자,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 지원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 1인당(세대당) 1대, 법인·기업 1개소당 1대로 보급 구매대수 제한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격부여 후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완료
 - ※ 2개월 이내 차량 미출고 시,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 '고령군'으로 제한

2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대상 및 차종별 지원금액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에 게재

○ 대상차종

-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③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 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지원 금액

가. 전기승용차

(중·대형) 최대 1,250만원 범위 내 차등 지원 (초소형) 480만원 정액 지원
(소형) 최대 1,057만원 범위 내 차등 지원

※ 초소형 차량의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음

※ 개인사업자,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 국비만 지원하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추가 지원 >

1. 전기택시 구매 :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조건) 구매자가 택시사업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중소기업인 택시법인
2.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3. 차상위 이하 계층의 청년이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청년 :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34세 이하인 사람
4. 리스/렌탈 사업목적으로 구매 : 국비 180만원 이내 차등 지원
5.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나. 전기화물차

(소 형) 최대 1,700만원 범위 내 차등 지원 (초소형) 400만원 정액 지원

(경 형) 최대 1,236만원 범위 내 차등 지원

※ 초소형 차량의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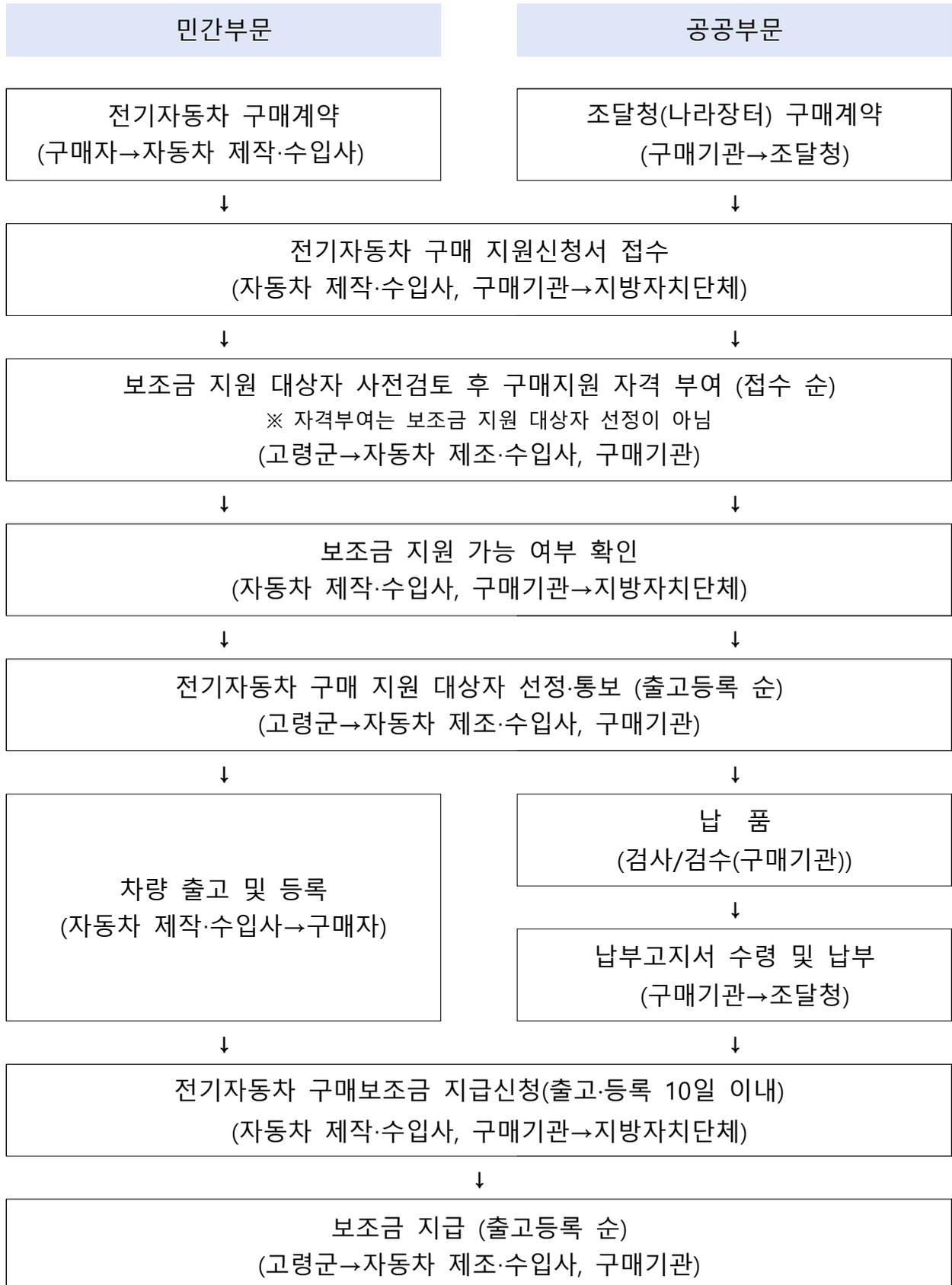
※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국비만 지원하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추가 지원 >

1. 소상공인 :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2.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3. 기존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3. 2. 13.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4. 기존에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자가 전기화물차 구매
 -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시 : 성능보조금 50만원 추가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자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5. 택배용 차량 구매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소상공인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조건)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
※ 구매보조금 지급일부턴 6개월 이후 조건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3

사업절차



4

사업신청

○ 신청기간

- 1차 : 2024. 2. 27.(화) ~ 2024. 6. 28.(금)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2차 : 2024. 7. 1.(월) ~ 2024. 12. 6.(금)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2차의 경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에만 공고

○ 신청방법 ※ 구매 지원신청서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가능(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민간부문)

- ① 신청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전국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 후 구매 지원신청서를 영업점에 제출
- ② 영업점은 접수된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으로 제출·접수

(공공부문)

- ① 공공기관은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한 구매계약 체결
- ② 공공기관은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으로 제출·접수
※ 공공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전기차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민간부문)

- 공통

- 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서식 1] 및 보조금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서식 1-1]
- ②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재)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최근 5년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 개인사업자

-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추가 서류(해당되는 경우) >

- 기초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상이유공자 :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 만 18세 ~ 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기존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대체 구매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자동차말소등록증
- 소상공인 : 소상공인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택시 : (개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택시사업자면허증 사본
(법인)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리스/렌탈 사업 목적 : 최종 사용자의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공공부문)

- 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서식 1] 및 보조금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서식 1-1]
- ② 조달청 계약서
- ③ 사업자등록증

※ 이 외에도 서류검토 과정에서 고령군이 추가자료 요청 가능하며, 자료 제출 거부 시 일정 기간 전기차구매지원 제한될 수 있음

5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
- 선정절차

① 접수순으로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구매 신청 자격 부여하며 전기자동차 제조·수입 영업점으로 통보

※ 자격부여는 자격만 부여된 상태로 보조금 지급 확정 대상자 의미 아님

※ 구매 신청 후 2개월 이내 출고, 등록 가능 차량만 보조금 지원 가능하며, 2개월 이내 차량 미출고 시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② 전기자동차 제조·수입 영업점은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접수

※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치 않고 출고된 차량의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③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10일 이내 미출고시 선정 취소

※ 예산 범위 내 잔여물량에 대해 다수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 시,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및 당초 구매 신청 자격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6 보조금 지급

○ 신청 서류

- 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 2] 및 청렴이행서약서[서식 2-1]
- ② 자동차등록원부(갑부/저당권 설정된 차량의 경우 “을”부 제출)
- ③ 세금계산서
- ④ 사업자등록증(자동차 제작·수입사) ※ 공공기관 생략 가능
- ⑤ 입금계좌 통장사본(자동차 제작·수입사) ※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통장사본

○ 추가 서류

- (기존에 소유한 경유화물차 폐차한 경우) 자동차말소등록증
- (택배용 차량) ※ 6개월 후 허가 유지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 시스템 재등록 필수

- ① 기존 경유화물차 자동차말소등록증
- 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영업용번호판, 지입차량의 경우 위수탁계약서

○ 지급 절차

- ① 구매자는 차량대금(차량가격에서 보조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을 영업점에 납부 후 차량 인수
- ② 전기자동차 제조·수입 영업점은 차량등록 후 10일 이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일체 원본을 고령군 지역경제과로 별도 우편 송부**

송부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55, 고령군청 지역경제과 전기차담당자

- ③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영업점에 보조금 지급하며, 영업점은 보조금 입금 확인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에서 '최종 완료' 처리
- ※ 추가 지원금의 경우 전기차 제작·수입사로 지급 처리함(6개월 후 지급하는 택배 추가 지원금도 동일)

7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 유의사항

1.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 고령군의 사전 승인 시 변경 가능
2. 전기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공동명의로 신청할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3. 지방세 등(세외수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4. 구매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이자)을 환수함

5.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확인 바람

○ 의무사항

1. 구매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의무운행기간(수출말소 8년, 그 밖의 경우 2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폐차, 수출) 시에는 고령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됨

※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차량보상금에 한함) 차량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하며,

※ 이 경우 환수금 납부 완료 시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재지원 가능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 >

①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율	70%	65%	60%	55%	50%	40%	30%	20%

②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2.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도 시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 승계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3. 보조금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함

8

기타

○ 전기차 보급 정책 관련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 ▶ 법인, 개인사업자(전기승용 및 전기화물) 2대 이상 구매 시 	1661-0970
고령군 지역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보조금 지원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054-950-6588

- 본 공고 내용에 표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고령군 지역경제과의 의견에 따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는데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

[서식 2]

2024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제작사)	제작사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구매자	성명 (법인명)		접수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락처	
전기차 구매내역	차량명	차량번호	수량	출고일자
사업비	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p>고령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 전기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해당 출고차량에 대하여 고령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24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청인 “제조·판매사”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20px;">고령군수 귀하</p>				
<p>※ 첨부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세금계산서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p>				

고령군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고령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고령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령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4년 월 일

서약자 : 성 명 “구매자” (서명)